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공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 1. ~ 12. (예산 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당초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변경

라. 지원인원: 25명 (업체당 최대 2명)

마.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바.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마감)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기간: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간 지원

[예시]

채용일	3. 15.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신청 기간	6. 1. ~ 12. 31.	○3월 ~ 5월 (3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 대상 기간	신청월부터 최대 6개월 간	○고용 및 도봉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에 한해 초과월에 대해 일괄 소급 지급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말일 기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25일경 지급(월별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 월 미지원 (예)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지원금은 5월분까지 지원
----	--

나. 지원조건

- ①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신규 채용
- ② 근로자는 지원 대상 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 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지원금 지급(월별 지급)
- ③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 불가)
-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기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다. 지원제외

- ①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업종 제외(주업종 기준) (※ 붙임 제외업종 참고)
- ②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한 경우
- ④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 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 ⑥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 ⑦ 희망장려금 지원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중복지원 불가) ※ **업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 수급은 가능함**
- ⑧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 지원금 합산 600만원을 모두 지원 받은 업체
 - ※ 근로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1인당 지원 한도(최대 300만원)가 남은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 ⑨ 기타 도봉구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체

라.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① 방 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② 팩 스: 02-2091-6265
- ③ 이메일: kenzo0202@dobong.go.kr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신청서류	①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각 1부. ③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붙임) 서식
증빙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사업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사업주 통장 사본 1부. ⑧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기준)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관리번호 다를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추가 ⑪ 월별 급여명세서 및 임금 내역서(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확인 ⑫ 사업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시 제출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정방법: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나. 결과통지: 선정 업체에 유선 통보

5. 문의사항: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02-2091-2862)

붙임: 1. 신청서식 각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